

사업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심사단계	1차 심사(서류·현장심사)	2차 심사(선정심사)
심사구분	서류 및 현장심사	사전브리핑 및 본 심사
심사담당	1차 심사위원회 * 교차심사(본원·지역·외부전문가)	중앙심사위원회 * 복지부, 개발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주요내용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비즈니스모델 및 재무건정성 등 검토 신청기관별 제안발표를 통한 최종선정

■ 선정기준

-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역량,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 최종 심사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rdi.or.kr>)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제출안내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접수처	관할지역	주 소	연락처
서강지역본부	서울, 강원	(0455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3 평광빌딩 10층	02) 6203-0963
부울경지역본부	부산, 울산, 경남	(475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아이즈비전 빌딩 3층	051) 507-637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경북	(42038)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56 (만촌동 1356-18) 효창빌딩 6층	053) 759-1900
경인지역본부	경기, 인천	(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070) 8858-8904
호남지역본부	광주, 전남, 전북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324(중흥동700-5) SRB 빌딩 6층	062) 365-8817
제주지사	제주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64) 805-3078
중부지역본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35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KTGO빌딩 5층	042) 476-9890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에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안내

사업정의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지원분야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기업인증형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된 형태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방법·절차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유형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지역특화형		시니어직능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신청자격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1~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 고령자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단체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계획 중인 법인 및 단체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대응투자	면제	지원 신청액 70% 이상	면제	면제	지원 신청액 70% 이상(직장형), 지원 신청액 20% 이상(직능형)
보조금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2억원	1억원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최소 고용인원	10명	10명 ~ 20명	10명	5명	10명 ~ 20명
교부금액 산정	추가 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 개선 기본자금 1억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2억원	1억원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교부기간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전액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원항목	기본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 관리 운영비 등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등) 및 인건비 ※ 보조금의 20%내 참여자인건비 편성가능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등) 및 인건비 ※ 보조금의 10%내 참여자인건비 편성가능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 관리 운영비 등
고용목표 설정 (지정년도제외)	1년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1년차 ~ 100%	1년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고용실적 인정기준	연중 3개월 이상 급여실적 있는자				
공통 제출서류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시), 대응투자이행계획서(해당시), 1부(해당시), 사업자등록증 1부,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공증필수), 국세 및 지방세 (해당시),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시 근거자료 제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동동의서) 각 1부,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법인정관 1부(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완납증명서 1부(해당시),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시),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		
유형별 추가제출 서류	전체 근로자 명부 사본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4대보험 납부증명원 및 가입자 명부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 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퇴직자 회원명부
설립형태	해당없음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성장지원	제품개발, 인증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경영지원 등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관리기간	지정년도 제외 5년 관리				
운영관리	연 4회 현장점검(정기 현장점검 2회, 비정기 2회)				
이행보증 보험가입	보조금 교부금액 이행보증보험 가입(관리기간)				